



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

■ 우편(등기) 보내실 곳 : (우)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8층 라이나생명(주) 보험금심사담당자 앞(고객센터 ☎ 1588-0058)

구분	참고	구비서류	
공통접수 서류	전체 공통 (필수)	① 보험금 청구서(보험금 수령 계좌번호 기재) ②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 ③ 수익자의 신분증 사본: 주민등록증(앞면)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	
	유형별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구서상 기재하신 계좌가 본인계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와 수익자 외 대리인 대표 상속인 수령 시 통장사본 제출 · 수익자가 아닌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수익자와 피위임자(예금주)가 작성하신 「보험금 수령 위임장」, 「보험금 수령 위임에 대한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(당사양식)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용도: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) 제출 ·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의 「기본증명서(상세증명서)」, ② 미성년자가 「본인」으로 등재된 「가족관계증명서(일반증명서)」, ③ 친권자가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변제의 무확인서(당사양식) 제출 ※ 단, 보험금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작성하고 인감 날인한 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(당 사양식)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· 수익자가 심신미약·심신상실·의식불명, 장애 등 정신적 제약의 경우 수익자의 「후견등기사항증명서」(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이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가능) 	
재해입증 서류	재해보험금 청구 시 필수 제출 (택 1)	1. 교통사고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손해보험사·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 확인서 ⇨ 각 기관(보험회사) 2.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금여지급확인서 ⇨ 근로복지공단 3.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⇨ 복무 군부대(치료 군병원 행정실 또는 업무과 문외) 등 4.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법원판결문 ⇨ 법원(인원실) 5.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 ⇨ 각 공공기관 6.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	
사망	기본(선택)	·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과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 원본	
	유형별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익자 미지정사(상속인) 추가 요청서류 ① 상속관계 확인서류(구제적등본, 사망지(피보험자)가 「본인」으로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 및 혼인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 ②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추가 「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(대표수익자지정서, 수익자 전원 인감날인 필요), 수익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· 일시금 청구 및 수령 요청서(당사양식) → 가족사랑플랜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로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	
입원	기본(필수)	· 진단명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)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조건서(선택가능)	
수술	기본(필수)	· 진단서·수술확인서 등 진단명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	
통원	기본(필수)	· 진단명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)과 통원치료일자가 모두 기재된 통원 확인서 및 재해입증서류	
골절	기본(필수)	· 골절부위 및 재해골절 최초 진단일 기재된 서류, 재해입증 서류	
장해	기본(필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후유장애진단서(일반 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인 경우에 진단서 제출 가능) ▶ 팔다리의 관절 척추의 운동장애는 AMA(영구적 신체 장애 평가 지침)에서 정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에 따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 내용 및 가입시기에 따라 구비 서류 및 지급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문의바랍니다. 	
	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만성신부전·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· 사지절단·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, Xray 필름 첨부 · 인공관절치환술·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 · 비장, 신장적출·비장,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· 장기이식(심장, 폐, 신장, 간장) 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 	
진단	기본(필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단서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 및 암 진단 확진 조직검사결과 * 단, 치매의 경우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	
	유형별	암	①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② 뇌/폐/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 못할 경우) ③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 못할 경우) 및 혈액검사 결과지
		심근경색 뇌출혈	·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, 심전도결과지,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
		치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지기능검사(CDR)결과지, 한국형간이인지기능 검사결과지(MMSE-K) 영상검사결과지 ▶ 치매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상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 고객센터 (전화 1588-0058)를 통해 가입하신 보험 계약의 보장내용 및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손	기본(필수)	·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와 진료비세부내역서(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)	
	별 유형	입원	· 진단명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)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조건서(선택 가능)
		통원	① 3만원 이하 청구의 경우: 병원진료비 영수증(질병명 기재) ② 3만원 이상 청구의 경우: 진료기간이 동일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기재된 처방전
		처방	· 의사처방전 및 일차별 약제비계산서(영수증) → 카드결제 영수증은 접수 및 심사 불가합니다.
장기요양 간병자금(필수)	·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장기요양 인정서	· 재가급여지원금(필수)	· 장기요양 인정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

- 대한민국 정부원인 포털사이트 민원24시(www.m24.go.kr)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(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
- 진단서 등 청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시려는 경우, 접수 전에 반드시 당사 콜센터(1588-0058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(심사 과정에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추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)
- 서류별 발급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www.hiack.go.kr) 홈페이지(병원/약국/비급여 진료비 정보)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상가 안내장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기본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사고내용, 특성, 상طم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콜센터(1588-0058) 또는 홈페이지(www.hiack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